

#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

## 1. 목적

-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, 경영·마케팅,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(체험 등)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률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활력증진에 기여

## 2. 추진방향

- 추진근거: 농촌진흥법 제19조(교육훈련실시), 제25조(정부의 재정적 지원)
-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관심 있는 분야의 작목 재배기술 등을 선도 농업인(농업법인) 또는 성공 농업(귀농)인으로부터 영농기술습득, 정착과정 상담·경영기법, 창업과정 등 연수
- 영농 초기의 경험 미숙 등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
- 농촌지역의 조기 적응은 물론, 농산업분야 창업(일자리창출) 시,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

## 3. 추진내용

- 1) 사업량: 2개소 4명(선도농가 2, 귀농연수생 2)
- 2) 사업기간: 2023년 3월~11월
- 3) 사업비: 12,000천원(국비 50%, 도비 50%)  
- 1,200천원/월 × 5월 × 2(개소) = 12,000천원  
※ 연수생 800천원/월, 선도농가 400천원/월(20일, 160시간 기준)
- 4) 예산과목: 농업기술원, 농촌진흥사업 기반조성, 서부농업기술개발, 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지원(서부), 일반보전금, 기타보상금
- 5) 교육대상  
【연수생】 ※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대상자  
○ 농식품부 2023년도 「청년후계농(청년창업형 후계농) 선발 및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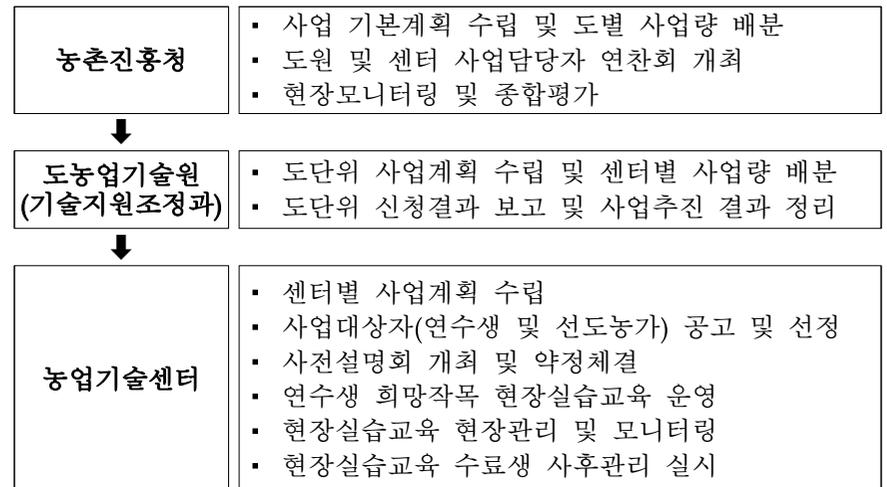
### 영농정착 지원사업」 신청자

- ※ 신청했지만 탈락한 자 또는 지원금 수령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자
-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
-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(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)
-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
- 예비귀농인(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 이수 35시간 이상하고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)

### 【선도농가】

-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,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, ICT(정보통신기술) 활용 농가·우수농업법인,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(WPL), 농업명인,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
- ①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,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(농촌진흥사업 시범 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선정시 우대 할 수 있음)
- ②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(초보단계의 연수생인 경우 3년 이상 된 정착 귀농인도 선도농가로 가능)
- ※ 해당 지역에 연수 관심분야의 선도농가가 없거나 연수희망자가 타지역의 맞춤형 연수를 원할 경우, 연수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(확인)한 선도농가 실습장에서도 연수 가능

## 6) 추진체계



## 7) 운영방법

- (필수)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
  - ※ 단순노동(작업)보다는 학습지원, 기술이전, 창업역량 강화에 역점 추진
- (선택) 오리엔테이션, 간담회, 평가회, 자율학습조직, 자가영농실습 등
- 현장실습교육 기간의 탄력적 운영: 3~7개월, 월 160시간
  - 자가영농 실습인정(일 4시간, 월 80시간 이내): 사업담당 및 선도농가 협의
    - ※ 자가영농의 경우에도 선도농가 실습도 병행되어야 함
    - (예) 자가영농 오전 4시간, 선도농가 오후 4시간
- 주작목+부작목 연수가능, 선도농가 및 연수생 복수지원 가능
- 잔여 실습기간을 우수 실습농가 및 차순위 실습농가에 배정 가능
- 1명의 선도농가에 2명의 연수생이 현장실습 가능(3명 이상 연수는 불가)
- 1명의 연수생이 2명의 선도농가에서 순차적 실습가능(연수기간 중복불가)
- 현장실습보고서(붙임 8)를 월 1회 e-HRD 시스템에 등록
  - ※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가 IT 취약계층일 경우 수기로 작성 및 관리

## 8) 사업신청

- 신청기간: 2023. 2. 15. ~ 2. 28.(14일간)
- 신청방법: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(☎760-7924) 방문신청
- 제출서류

### 【연수생】

-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(붙임 3 서식)
- ②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(붙임 4)
  - ※ 선정 시 e-HRD 시스템 입력 필요
- ③ 보안서약서(붙임 9 서식)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(붙임 10 서식)

### 【선도농가】

-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(붙임 5 서식)
- 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(붙임 6 서식)
  - ※ 운영계획서: 연수시행자의 주작목 및 기술현황, 실습사항, 교육의 주요 내용 및 목표, 목표의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작성
- ③ 선도농가 학습지원계획서(붙임 7) ※ 선정 시 e-HRD 시스템 입력 필요
- ④ 보안서약서(붙임 9 서식)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(붙임 10 서식)

## 9) 사업대상자 선정

### 【연수생】

-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대상자 선정을 위한 센터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대상자 선정
  - ※ 연수대상자 선정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또는 농정심의회에서 선정 가능
-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대상자 선정 시 농식품부 2023년도 「청년후계농(청년창업형 후계농)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」 신청자를 우대 할 수 있으며, 예비 귀농인의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이수(35시간 이상)하고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가능
- 연수대상자 선정은 연수시행자(선도농가)와의 약정체결(붙임 12 서식)을 통해 최종 선정
- 연수생은 안전을 위해 (농업인)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
  - ※ 가입비용은 연수생 부담

### 【선도농가】

- 공모를 통해 접수된 선도농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,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정기준에 의해 연수시행자를 최종 선정
-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선정된 선도농가와 연수생간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
- 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약정 불가
- 약정체결은 3~7개월을 원칙으로 하되, 연수생 및 선도농가 동의하에 연수 희망시 사업담당기관은 예산을 고려하여 연장하여 약정 가능
- 연수생과 선도농가는 현장실습교육 동안 각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가 불성실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지정기관에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 지정 취소를 요청 할 수 있음

## 10) 연수생 및 선도농가 관리

-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생 선정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장

지정 완료 후 선도농가가 제출한 연수운영계획서, 현장실습교육장 관련 각종 정보자료와 연수생이 제출한 연수신청서를 서로 교환·열람하도록 하여 사전 충분한 판단기회 제공으로 약정체결이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

※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일시·장소를 정하여 『사전설명회』 개최(필수)

-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 이행여부를 지도·감독하고, 그 결과에 대하여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(결과) 점검보고서(붙임 13 서식)를 작성하고, 이를 관리·비치하여야 함
- 약정의 무효·해지·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수생과 선도농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

< 약정의 무효·해지·변경 등 >

- ★ 중대한 허위사실로 약정 체결 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지원금액 전체 회수
- ★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연수생에 대한 약정금액 미지급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·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

- 연수생 및 선도농가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 약정이 가능하며, 이때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, 연수생과 선도농가 간 다시 약정체결 가능
- 연수생 및 선도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선도농가·연수생 pool 구축 및 연수생과 선도농가에 대한 교육 등 추진  
※ 선도농가 및 연수생 pool 구축사이트: <http://hrd.rda.go.kr>
- 현장실습교육장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모든 연수생에게 스마트 기기 (휴대폰)를 활용한 「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」을 사용하게 하고 결과를 모니터링 하여야 함 ※ <http://hrd.rda.go.kr>  
※ 『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』 위주의 출석체크를 원칙으로 하며,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「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」과 「출근부」를 병행하여 사용 가능

## 11) 교육훈련비 및 교육수당 지급

### 【교육훈련비】

- (지급대상) 연수생
- (지원금액) 월 80만원 한도(3~7개월간)
- (지원조건) 매월 10일(1일 8시간)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며, 훈련비는 연수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  
※ 10일 미만 연수 시에는 교육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, 10일 이상 연수 시에도 연수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 
※ 1일 지급단가 산정기준(8시간 기준): 4만원(교통비, 식비 포함)
- (1일 교육시간 한도) 8시간
- (신청방법) 연수생은 교육훈련 후 매월 단위로 출근부(사본), 입금받을 통장사본을 첨부한 교육훈련비 청구서(붙임 14 서식)를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함  
※ 최초 신청 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약정서도 함께 제출
- (지급시기 및 방법)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생의 월별 현장실습 보고서(시스템) 확인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교육훈련비를 연수생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함  
※ 출석확인은 「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」 또는 출근부(서류)를 통해 확인

### 【교수수당】

- (지급대상) 선도농가
- (지원금액)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(3~7개월) 지급  
※ 교수수당은 연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연수생이 2명일 경우 2배 지급
- (지원조건) 선도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 제공하여야 함  
※ 실습포장에서 나온 결과물은 선도농가의 소유물로 함
- (신청방법) 선도농가는 교육훈련 후 매월 단위로 연수 추진실적(결과)보고서(붙임 18 서식), 입금 받을 통장사본을 첨부한 교수수당 청구서(붙임 17 서식)를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함  
※ 최초 신청 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약정서도 함께 제출  
※ 연수 추진실적(결과)보고서는 월별 현장실습보고서 시스템으로 대체 가능
- (지급시기 및 방법)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월별 현장실습 보고서 시스템 확인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연수수당을 선도농가 은행계좌에 입금

## 12) 제재조치

-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(연수생 및 선도농가) 선발 또는 실습시작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실습참여를 포기하는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는 다음 연도부터 3년간 현장실습교육 사업대상에서 제외

## 13) 연수생 사후관리

-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현장실습교육 종료 후 2년간 수료생에 대하여 관리대장(붙임 20 서식)을 작성·비치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
※ 사후관리내용: 귀농여부, 영농종사 현황 등

## 4. 행정사항

### ○ e-HRD 시스템 입력

-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
  - 교육과정 등록(담당자): 교육 전
  - 회원가입(사업대상자): 사업대상자 선정 후 1주 이내
  - 사업대상자 매칭(담당자): 연수생·선도농가 약정 후 1주 이내
  - 월별보고서 등록(사업대상자): 매월
  - 수료생 등록(담당자): 교육 후 2주 이내

### ○ ASTIS 등록

-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
  - 사업계획: 센터별 사업대상자 선정 완료 시, <양식 3> 참조
  - 결과보고: 하반기 11.30일 까지 <양식 4>
  - 결과보고<양식 2>: 상반기 6.30일까지, 하반기 11.30일까지
-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
  - 사업계획: 센터별 사업대상자 선정 완료 시, <양식 3> 참조
  - 결과보고: 하반기 11.30일 까지 <양식 4>

<양식 3>

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																		
센터	구분	성명	성별	연령	주소	이메일	휴대폰	연작	수목	연기(개)	영농현황			선도농가 구분				
											영농종	영농지인분비	추후결정	선도농가영인	농업법인	WPL	신지식인	기타
서부센터	선도농가																	
	귀농연수생																	
	선도농가																	
	귀농연수생																	

- \* 영농현황은 귀농연수생만 작성하며, 해당되는 사항에 ○표
- \* 선도농가 구분은 선도농가만 작성하며, 해당되는 사항에 ○표

<양식 4>

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실적																		
센터	구분	성명	성별	연령	주소	이메일	휴대폰	연작	수목	연기(개)	영농현황			선도농가 구분				예산집행액(천원)
											영농종	영농지인분비	추후결정	선도농가영인	농업법인	WPL	신지식인	
서부센터	선도농가																	
	귀농연수생																	
	선도농가																	
	귀농연수생																	

- \* 영농현황은 귀농연수생만 작성하며, 해당되는 사항에 ○표
- \* 선도농가 구분은 선도농가만 작성하며, 해당되는 사항에 ○표

○ 문제점 및 개선방안

센터	문제점	개선방안

○ 우수사례(도별 2건)

우수 사례

○ 2021~2022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생 관리대장 \*(붙임 20)참조

No	성명	성별	생년월일 (주민등록번호)	휴대폰	주소	연수 작목	연수 기간 (개월)	영농현황 (실습종료시)			영농현황 (실습종료 1년 후)			영농현황 (실습종료 2년 후)				
								영농 중	영농 진입 준비	추후 결정	영농 중	영농 진입 준비	추후 결정	영농 중	영농 진입 준비	추후 결정		
1	홍길동	남	2000.1.1.	010-0000-0000	전주시	사과	2021.5.1.~9.30.(5개월)			○			○			○		
2																		

\* 농업기술센터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 후 2년간 사후관리 실시

【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참고서식】

< 목 차 >

- (붙임 1) 선도농가 선정기준(안)
- (붙임 2) 연수생 선정기준(안)
- (붙임 3)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
- (붙임 4)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(시스템 입력)
- (붙임 5)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
- (붙임 6)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
- (붙임 7) 선도농가 학습지원 계획서(시스템 입력)
- (붙임 8) 현장실습보고서(시스템 입력)
- (붙임 9) 보안서약서
- (붙임 10) 개인정보 이용동의서
- (붙임 11)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현황
- (붙임 12)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 (표준)약정서
- (붙임 13)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(결과) 점검보고서
- (붙임 14) 연수생 교육훈련비 청구서
- (붙임 15) 연수생 출근부
- (붙임 16) 연수생 현장실습교육 실습일지
- (붙임 17) 선도농가 교수수당 청구서
- (붙임 18)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 추진실적(결과) 보고서
- (붙임 19)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 증명서
- (붙임 20)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생 관리대장

### 선도농가 선정기준(안)

평가항목	배점	득점	비고
<b>○ 연수시행 기반 및 수행능력</b> - 동일 또는 유사사업 수행경험 * 고용부 농산업인턴제, 농식품부 WPL 등 - 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및 교육이수실적 - 영농규모 및 관련분야 기술보유 현황 * ICT(정보통신기술) 활용 시설 등 - 실습포장, 교육장 위치 및 효율성, 교재 등 구비여부	30		
<b>○ 연수계획의 적절성 및 실효성</b> - 연수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- 월별 실습내용의 실천 가능성 - 연수후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	40		
<b>○ 기타여건</b> - 농업기업, 유관기관 등 연수관련 협력수준 - 작목반, 타 농가와의 협력 및 참여도 - 관련분야 자격증 보유 여부 - 현장실습 코칭 및 지도계획(시스템 활용 등) - 여성농업인 여부	30		
합 계	100		
<b>총 합 의 건</b>			

### 연수생 선정기준(안)

구분	평가항목	평가 및 배점기준	점수
계	100점		
신청자 자격 (40점)	○ 신청자 연령(10)  ○ 본인 포함 가족수(10) ○ 귀농 후 농촌거주기간(10) ○ 2023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(5) ○ 여성 또는 부부참여(5)	○ 만 30세 이하(10), 31~40세(7), 41~50세(5), 51~60세(3), 61세 이상(1) ○ 4명 이상(10), 3명(7), 2명(5), 1명(3) ○ 3년 이상(10), 1~2년(7), 1년 미만(5) ○ 신청자(5), 미신청자(0) ○ 여성 또는 부부참여(5), 그 외(0)  ※ 증빙서류: 주민등록 관련자료(주소이력 포함)	( ) ( ) ( ) ( )
귀농교육 (15점)	○ 귀농교육 이수시간(15)	○ 100시간 이상(15), 71~99시간(10), 51~70시간(5), 21~50시간(3), 20시간 이하(1)  * 사이버교육은 수료시간의 50% 인정  ※ 증빙서류: 교육수료증 등	( )
사업규모 (10점)	○ 농지보유 및 임차규모(5) ○ 농업시설 및 임차규모(5)	○ 농지 6,000㎡, 대가축 2두 이상(5) 농지 6,000㎡, 대가축 2두 미만(3) ○ 하우스 등 농업시설 1,500㎡ 이상(5) 하우스 등 농업시설 1,500㎡ 미만(3)  * 임차농지 및 시설 포함  ※ 증빙서류: 농지원부 등 관련증빙자료	( ) ( )
사업계획 (20점)	○ 사업계획 수립(10) ○ 시스템 활용의지 및 사업화 방안(10)	○ 우수(10), 보통(7), 미흡(5) ○ 우수(10), 보통(7), 미흡(5)  ※ 증빙서류: 사업계획서(시스템활용계획 등)	( ) ( )
기타여건 (15점)	○ 신청자 영농 및 사업의지(10) ○ 마을주민과 화합 및 마을 기여도(5)	○ 우수(10), 보통(7), 미흡(5) ○ 우수(5), 보통(3), 미흡(1)  ※ 증빙서류: 자율양식	( ) ( )

###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

###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작성요령

신청자	(성명)	(주민등록번호)	-
①연 령(만)		②(이주 전) 거주지	예) 경기 수원
③기 이수 귀농 교육 과정명	예) 농촌진흥청 제대예정군인 귀농교육('19)		
현 주소지			
연 락 처		이메일 주소	
④연수희망작목	(주작목)	(부작목)	
⑤연수희망지역	(최우선 지역)	(우선 지역)	(차선 지역)
⑥연수희망기간			
⑦자기소개 및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유			
⑧만40세 미만의 경우	농식품부 2023년도 「청년후계농(청년창업형 후계농)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」 신청사실 여부.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신청		
⑨기타 특이사항			
⑩추천기관 확인란	(소속)	(직위)	성명 (인)

- ① 연 령(만):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
  - ② 이주 이전 거주지: 귀농 전에 거주했던 지역을 간략하게 기재
  - ③ 공인 귀농교육과정: 우선 순위 선정시, 활용하고 해당 센터는 필요 시 귀농 교육기관에 사실여부 확인
  - ④ 연수희망작목: 연수를 희망하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
  - ⑤ 연수희망지역: 연수를 희망하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읍면단위로 기입 (희망 선도농가(농업법인) 기재 가능)
  - ⑥ 연수희망기간: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 하되,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(예시 : 3월~12월)
  - ⑦ 연수를 받고자하는 사유: 선도농가와와의 약정체결시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술(별지 사용가능)
  - ⑧ 만40세 미만의 경우 농식품부 2023년도 「청년후계농(청년창업형 후계농)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」 신청사실 여부에 반드시 체크
  - ⑨ 기타 특이사항: 선도농가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
  - ⑩ 추천기관: 해당 지역 시·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귀농 총괄부서에서 연수신청서 사전 확인·보완 후 추천 가능
- \*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

본인은 2023년도 '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' 연수를 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.

신 청 일 : 2023년 월 일

신 청 인 : (인)

별첨 : 작성 시 유의사항(뒷면)

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 
추진계획서(시스템입력)

연수개요

센터명	연수생		선도농가 성명(예상)	현장실습기간 (희망기간)	희망 연수작목
	성명	귀농연월			
		2022. 3		4.1~9.30	

현장실습교육 동기(목적)

현장실습교육을 통해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(3가지 이상)

**【농업기술, 사업화기술, 사업마인드, 관계강화 등】**

선도농가에게 바라는 점

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

① 신청자	(성명) (사업자등록번호)	(주민등록번호)	-
주사업장 주소			
연 락 처		이메일 주소	
② 연수가능작목	(주작목)	(부작목)	
③ 연수가능지역			
④ 연수가능기간			
⑤ 자기소개	1. 주작목의 영농규모 2. 전체 영농규모 3. 영농경력(년)		
⑥ 현장실습 연수 운영계획 요약			
⑦ 기타 특이사항			
⑧ 추천기관(단체) 확인란	(소속)	(직위)	성명 (인)      적합여부

본인은 2023년도 ‘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’ 지침에 의거 ‘현장실습교육장’ 지정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.

신 청 일 : 2023년 월 일

신 청 인 : (인)

별첨 :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

###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작성요령

- ① 신청자: 농업인은 성명과 생년월일, 농업법인은 명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
- ② 연수가능작목: 선도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
- ③ 연수가능지역: 선도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입
- ④ 연수가능기간: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 하되,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(예시 : 2~12월)
- ⑤ 자기소개: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근거로 이용됨으로, 구체적으로 작성하되, 영농규모, 영농경력, 매출액 등을 상세히 기재(필요 시 별지에 작성이 가능)
- ⑥ 현장실습 연수 운영계획 요약: 현장실습교육의 연수과정 및 연수방법 등을 기재하되, 별첨의 운영계획서를 요약하여 기입
- ⑦ 기타 특이사항: 연수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
- ⑧ 확인란: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시행자(선도농가) 후보자를 확인할 때에는 자질과 소양, 영농기술 수준, 연수 관련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필요

\*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

###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

①신청자	(성명) (사업자등록번호) (생년월일)
②연수가능작목	(주작목) (부작목)
③연수가능기간	
④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	
⑤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	
⑥월별 실습사항	
⑦실습 기대효과	
⑧추천기관 확인란	(소속) (직위) 성명 (인)      적함여부

본인은 2023년도 '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' 운영계획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.

신청일 : 2023년 월 일

신청인 : (인)

<뒷면>

###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작성요령

- ① 신청자: 농업인은 성명과 생년월일, 농업법인은 명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
- ② 연수가능작목: 선도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
- ③ 연수가능기간: 연수가능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 하되,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(예시: 3월~12월)
- ④ 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: 연수생이 선도농가를 선택하는 판단 자료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
- ⑤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: 연수생에게 제공하는 연수 내용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
- ⑥ 월별 실습사항: 연수희망기간 내에 월별로 진행되는 주요 현장실습 사항을 기재
- ⑦ 실습 기대효과: 연수희망기간 내에 현장실습 수행시 기대되는 영농 기술 및 경영 능력 향상 등을 기입
- ⑧ 확인란: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선도농가 후보자의 운영계획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, 필요시 선도농가 후보자와 협의·보완 등 조치 필요

\*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

[붙임 7]

### 선도농가 학습지원 계획서(시스템 입력)

구 분	주 요 내 용						기타 사항
	시·군·명	선도농가		연수생 성명 (예상)	연수희망기간		
성명		영농연월	시작일		종료일		
핵심 생산기술							
경영·유통 및 창업							
농촌적응 노하우							
견학·지인 소개							
기대효과							



[붙임 10]

### 개인정보 이용동의서

○ 성 명:

○ 주민등록번호:

○ 주 소:

상기 본인은 농촌진흥청의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.

2023년 월 일

성명 (인)

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

[붙임 11]

###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현황

(단위 : ha, 마리, 년)

성명	연령 (만)	전화번호	이메일	영농규모 등			
				주작목명	주작목 영농규모	전체 영농규모	영농 경력

\* 작성요령

- 성명 : 농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기재
- 나이 : 2023년 1월 1일 기준
- 영농규모 : 농지 · 시설하우스 · 축사 등은 평 또는 ha기준, 가축은 두수
- 영농경력 : 년 단위

##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 (표준)약정서

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시행지침(이하 “지침”이라 한다)에 의거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, ( )소장을 “갑”이라 하고, 선도농가 ( )를 “을”이라 하며, 연수생 ( )을 “병”이라 하며, “갑”·“을”·“병”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.

1. 약정기간: 2023년 월 일부터 2023년 월 일까지( 개월)

### 2. 약정내용

제1조(총칙) “을”은 “병”에 대하여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상의 내용을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제공하며, “병”은 “을”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이수한다.

제2조(약정의 해약) ①“갑”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.

1. “을”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.
2.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.
3.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약정이 무효화 되었을 경우 “갑”은 “을”과 “병”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약정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“갑”은 “을”과 “병”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3조(연수생과 선도농가) ①“병”은 당초 “을”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연수내용 등이 다를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“갑”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“을”은 “병”이 당초 “을”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연수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“갑”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“을”과 “병”간에 연수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“갑”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“을”과 “병”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④“을”은 현장실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고예방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, “병”

은 “을”의 지시에 따라 현장실습교육에 임하여야 한다.

⑤“병”은 현장실습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(농업인)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, “을”은 “병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적, 물적 손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기타 사항은 “을”과 “병”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(지침 및 약정의 준수) ①“을”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.

②“병”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연수대상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.

제5조(지침의 적용)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.

제6조(해석)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“갑”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.

제7조(특약)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촌진흥청의 지침과 본 약정 제1조내지 제6조에 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“갑”, “을”과 “병”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.

※ 특약사항 :

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“을”, “병”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“갑”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“갑”, “을”, “병”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월 일

“갑” 농업기술센터소장 : 인 또는 서명

“을” 성명 : 인 또는 서명

“병” 성명 : 인 또는 서명

<붙임> :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1부.

<앞면>

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(결과) 점검 보고서

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(결과) 점검 보고서 작성요령

①선도농가	(성명) (사업자등록번호) (생년월일)
②연수생	(성명) (생년월일)
③연수작목	(주작목) (부작목)
총 연수기간	
④보고연수기간	
⑤ 교육의 주요 내용	
⑥기타 특이사항	
⑦종합검토의견	

- ① 선도농가: 개인의 경우는 성명과 생년월일, 농업법인은 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,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
- ② 연수생: 연수생에 따라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함
- ③ 연수작목: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
- ④ 보고연수기간: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연수기간을 기입(결과 보고서에서는 전체연수기간과 동일)
- ⑤ 교육의 주요 내용: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교육 내용을 기입
- ⑥ 기타 특이사항: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
- \* 추진상황 점검시 귀농연수생이 없을시 부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(외출계, 출근부 등)
- ⑦ 종합검토의견: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한(할) 사항을 기입

2023년도 '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' 시행지침에 의거 상기와 같이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합니다.

2023년 월 일

점검자 : 소속 직위 성명 (인)

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





<앞면>

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실적(결과) 보고서 작성요령

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 추진실적(결과) 보고서

①선도농가	(성명) (사업자등록번호) (생년월일)
②연수생	(성명) (생년월일)
③연수작목	(주작목) (부작목)
전체연수기간	
④보고연수기간	
⑤교육의 주요 내용	
⑥기타 특이사항	

- ① 선도농가: 개인의 경우는 성명과 생년월일, 농업법인은 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,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
- ② 연수생: 연수생이 2인일 경우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
- ③ 연수작목: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
- ④ 보고연수기간: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연수기간을 기입  
(결과보고서에서는 전체연수기간과 동일)
- ⑤ 교육의 주요 내용: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교육 내용을 기입
- ⑥ 기타 특이사항: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

2023년도 ‘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’ 시행지침에 의거 상기 추진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\* 선도농가는 매월 추진실적 보고, 사업종료 시에는 결과 보고서로 제출 (단, 시스템 보고자는 생략 가능)

2023년 월 일

보고자(선도농가) : (인)

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

제 호

##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 증명서

성 명 : \_\_\_\_\_

주 소 : \_\_\_\_\_

생년월일 : \_\_\_\_\_

연수기간 : \_\_\_\_\_ ~ \_\_\_\_\_ (총 시간)

연수작목 : \_\_\_\_\_

위 사람은 농촌진흥청이 시행하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에 참가하여 그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

2023년 월 일

서부농업기술센터 소장

##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생 관리대장

No	성명	성별	생년월일	휴대폰	주소	연수작목	연수기간 (개월)	영농현황 (실습종료시)		영농현황 (실습종료1년 후)		영농현황 (실습종료2년 후)	
								영농중 영농진입준비	추후결정	영농중	영농진입준비	추후결정	영농중
1	홍길동	남	2000.1.1.	000-0000-0000	전주시	사과	2021.5.1.~9.30. (5개월)		○		○		○
2													
3													
4													
5													
6													
7													
8													
9													
10													
11													
12													

\* 농업기술센터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 후 2년간 사후관리 실시